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나295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나2956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단1038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온

담당변호사 한웅현

변론종결 2024. 7. 23.

판결선고 2024. 10. 15.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단103882 판결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U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10.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4,620,81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4,620,816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제1심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대출금액	대출은행
1	2015. 5. 22.	154,400,000원	193,000,000원	C은행
2	2016. 12. 16.	126,400,000원	158,000,000원	D은행
3	2018. 8. 23.	739,500,000원	870,000,000원	D은행

나. 그 후 2021. 8.경 B이 위 대출금의 원리금변제를 연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B를 대위하여 2021. 11. 10. C은행에 129,097,713원, 2021. 11. 24. D은행에 797,253,448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21. 7. 9.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를 T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1. 7. 12.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 U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2023. 10. 18.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44,620,81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B의 위 신용보증사고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 등을 통해 확인된 B의 적극재산은 합계 3,632,000,000원 상당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은 합계 4,179,629,294원 상당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부 동 산	감정가액(원)
1	이 사건 아파트	1,280,000,000
2	의정부시 E아파트 F호	1,000,000,000
3	양주시 G건물 H, I, J, K, L호	1,352,000,000
	합계	3,632,000,000

순번	채 권 사	채무액(원)
1	원고	935,492,178
2	M	340,000,000
3	N	1,000,000,000
4	O은행	488,528,570
5	O은행	688,984,718
6	P	170,349,918
7	C은행	64,562,773
8	D은행	308,581,294
9	C카드	63,505,280
10	주식회사 Q	23,750,000
11	기업은행	55,192,348
12	D카드	40,682,215
	합계	4,179,629,29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기업은행, D은행, C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서 B의 C은행 및 D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액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피고에게 344,620,816원이 배당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진술을 하고,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4,620,816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44,620,81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

가) 피고는, B이 2021. 7. 9.경 무렵 주식회사 R에 대한 2,720,749,263원 상당의 의약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2021. 7. 16. 위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R이 의료법인 S에 대해 가지는 967,140,452원의 의약품대금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대금채권 혹은 적어도 의료법인 S이 B에게 변제한 967,140,452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대금채권은 회수가가능성 내지 변제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T의 증언, 이 법원의 V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B의 2021. 7. 9.경 무렵까지의 주식회사 R에 대한 총 공급가액 합계는 2,837,704,041원¹⁾으로서, 이 사건 대금채권 2,720,749,263원을 상회하는 점, ② 주식회사 R은 2021. 7. 16. 이 사건 대금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R이 의료법인 S에 대해 가지는 967,140,452원의 의약품대금채권을 B에게 양도한 점, ③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당심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제18호증)상 2021. 7. 16. 기준으로 주식회사 R이 B에게 갚지 못한 의약품대금채권은 약 27억 원 상당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B이 2021. 7. 9. 당시 주식회사 R으로부터 이 사건 대금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1. 7. 9. 당시 B이 이 사건 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금채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합계 6,352,749,263원 상당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순번	부 동 산	감정가액(원)
1	이 사건 아파트	1,280,000,000
2	의정부시 E아파트 F호	1,000,000,000
3	양주시 G건물 H, I, J, K, L호	1,352,000,000
4	이 사건 대금채권	2,720,749,263
합계		6,352,749,263

2) 소결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6,352,749,263원이고, 소극재산의 가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계 4,179,629,294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원상회복 주장도 이유 없다(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에 B의 피고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여전히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소영, 판사 전승환, 판사 김경애

별지

부동산 목록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10층 호 84.9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 18105.9㎡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8105.9분의 41.2510

끝.

1) = 2021. 1. 31.자 공급가액 373,256,858원 + 2021. 2. 28.자 공급가액 433,859,989원 +
2021. 2. 28.자 공급가액 106,002,546
원 + 2021. 3. 31.자 공급가액 724,805,212원 + 2021. 4. 30.자 공급가액 525,535,240원 +
2021. 5. 31.자 360,396,055원 + 2021. 6. 30.자 313,848,141원)